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9 .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8. 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3. 8. 4.
-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 4차 위원회(2003. 9. 1)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

- 마포구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의 징수금
-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및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구에 소재하는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 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함(안 제6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등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사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 상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와 구청장이 정한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법률제6024호)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실시 등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를 보면 안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구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안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안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 규정하였음.

안제8조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 정하도록 하였음.

안제13조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동조례(안)의 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마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운용코자 하는 것임.

2000년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활근로사업은 생산적 복지제도 정착에 주력하면서 종래 단순 근로 중심의 취로형 자활사업에서 탈피,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프로그램의 취약성과 근로유인 부족,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미비와 지역별 편차 등으로 자활사업의 정착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2002년도 마포구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 총1,137명 중 생산적 복지제도의 모델인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 67명, 자활공동체 사업에 4명이 참여한 반면 단순 근로 중심의 취로형사업에는 958명이 참여하여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의 확대실시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필요성이 적극 요구되고,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 94명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의뢰하였으나 실제 취업시킨 인원은 극히 저조하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의 미비 등으로 일부 사업실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자활지원사업 중 up-grade형 자활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자활사업이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종목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및 자활공동체 설립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안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정한 규모이상 적립하여야 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의 등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음. 마포구에서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바, 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총괄관리 시행하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천규 위원) : 안 제2조의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액은 어느정도인가?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임.

- 질의요지(윤동현 위원) : 10억이 되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없고 본래의 취지가 상충되지 않는가?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이기에 본기금 운용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질의요지(송태섭 위원) :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인원수와 임무는?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15명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보장비용징수, 사회복지사업의 정책결정 등임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기금지원금은 어떻게 이루어 지며, 지원규모는?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지원은 기금의 이자로만 이루어지며, 기금 10억이 다 채워졌을 경우 이자를 3%로 가정하면 년 3,000만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회수금 약 1,500만원 합쳐서 약 4,5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질의요지(정해원 위원)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가능성 여부와 기금 예치시 구금고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 답변요지(조수남 사회복지과장) :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가능성은 희박하나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마련때문에 조례내용에 삽입하였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구금고로 한정한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 2003. 8
제출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재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1)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
- (3) 마포구이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4)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 (5)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 (4)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및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5)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구에 소재하는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함.(안 제6조)
- 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사업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와 구청장이 정한 이자율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법률 제6024호) 제44조 등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2003.1.2 대통령령 제17877호) 제41조 등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10억조성(200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2억원씩 적립 필요함)

6. 기 타

입법예고(2003. 5.31.~6.2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자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 관리 대 장

(단위 : 원)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기금 출납 부

(단위 : 원)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재	담당	과 장
				협조	담당주사	
				결재		
				협조		
				결재		
				협조		
				결재		
				협조		
				결재		
				협조		